

■ 법률 칼럼

# 취업이민 첫 단계인 Labor Certification (노동승인)

취업이민 과정의 첫 단계로 흔히 Perm 이라고 통칭되는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허가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Labor Certification(노동승인)

잘 알려진 대로 취업이민은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단계와 실제 이민 신청의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미국 노동부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노동승인 신청을 심사합니다.

### 1. 구인광고의 적절성

취업이민의 첫 과정은 취업이민 스폰서가 미국 연방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에 외국인인을 고용하기 위한 영주권 신청 허가를 요청하는 노동승인 단계입니다. 노동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고용주는 미국 내에서 고용주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에 미국 내 거주자(미국 내에서 노동이 가능한 시민권자, 영주권자나 노동허가증 소지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적당한 지원자를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취업이민 신청자를 고용주 회사에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 노동부는 고용주가 미국 내 거주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로 일정 기간 동안 그 직종에 대한 구인 광고를 신문이나 기타 매체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인광고를 보고 고용주 회사로 오는 모든 이력서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현재 고용주 회사의 직종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는지를 확인하여 합니다. 고용주는 이 모든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노동승인 과정은 미 노동부가 고용주가 적절하게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광고를 했는지 그리고 그 광고를 보고 보내진 이력서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답변을 했는지를 점검합니다.

### 2. 사업상의 필요(Business Necessity)

또 미 노동부는 노동승인 심사 과정에서 현재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종이 고

용주 회사에 꼭 필요한 직종인가를 고려합니다. 만약 고용하려고 하는 직종이 고용주의 사업상 필요한 직종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미 노동부는 노동승인 신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규모가 아주 작은 회사인 경우 그 위한 회사만을 위한 전문 회계사(CPA)를 고용하겠다고 노동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미 노동부는 그 직종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노동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 직종의 한시성 (finite)

노동부는 노동승인을 심사함에 있어서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종이 지속적(permanent)으로 필요한지 아니면 한시적(finite)으로만 필요한 직종인지를 고려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종이 고용주의 비즈니스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노동부는 노동승인 신청을 거부할 것입니다.

취업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위의 사항을 잘 고려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광고 요건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 주도록 신경쓰십시오. 그리고 취업이민 스폰서를 받을 직종을 정하실 때도 고용주 회사가 그 직종을 꼭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직종이 영구적 지속적으로 고용주 회사에 필요한지를 잘 고려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노동승인의 심사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감사(Audit)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잘 준수해 강화된 심사와 감사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권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장례 칼럼

# 장례 가격 (Funeral Price)

갑자기 상을 당하거나 예상한 사별이라도 미처 준비를 마치지 못해 장례 가격을 묻는 전화를 자주 받는다. 장의사에서는 성실하게 대답해 주어야만 한다. 장의사가 해야 할 최소한의 규정은 FTC Funeral Rule에 명시되어 있다(FTC는 Federal Trade Commission, 연방거래위원회, 미국 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모든 장의사는 각자의 장례 가격이 있고 명시된 가격표가 있다. 장례 가격표는 General Price List이라고 하며 장의사는 상담을 신청하는 분에게 가격표를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FTC에서 아주 중요하게 요구하는 사항 중 하나이다.

각 장의사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와서 장례 가격을 물어보든지 그 장의사의 가격은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중가격(Double Pricing)은 위법이다. 예를 들어 백인 위주의 동네에서 타인종이 장례 의뢰를 위해 가격을 문의했는데 정상적 가격보다 더 비싸게 불렀다면 이는 법에 위반된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FTC Funeral Rule의 수많은 조항 속에 종교단체, 혹은 추모단체(Religious Group and Memorial Society)에 주는 특혜가 있다.

3. Religious Group and Memorial Societies 이 조항의 첫 문장을 옮긴다 'Some funeral providers enter into agreement with religious groups, burial societies, or memorial societies to arrange funerals for their members at special prices. (장례를 제공하는 회사에서는 종교기관이나 주검을 주관하는 사회적 단체와 그들의 회원을 위한 특별한 가격을 계약할 수 있다.)'

즉 교회나 사찰이나 노인회의 장례상조회 같은 단체에서 장의사와 특별 가격으로 계약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아래 이야기는 본인이 안타깝게 기억하는 경험이다. 30대 초반의 자매가 우리 오피스에 왔다. 아버지가 갑자기 귀향하셔서 엄마는 충격 속에 있기에 딸



들이 장례를 진행하고 있었다. 우리 장의사가 늘 듣는 말이 "경험이 없어서 모른다"이다. 그렇다. 대부분 사별을 하고 장례를 주관해야 하는 경우는 일생에 한두 번. 그래서 모른다. 이 자매들이 나의 오피스에 오기 전에 묘지에 가서 묘지 상담을 마치고 왔었다. 묘지 상담인은 궁극적으로 물건과 서비스를 파는 Sales Person이기에 내가 보기에 필요 이상의 고가 물건들을 구입하게 했다. 경험이 없고 전혀 모르는 상황이며 감정적으로 지극히 연약한 상태이기에..... 실제로 장례를 진행할 때 보니 귀향한 망자는 종교기관(교회)에서 많이 충성 봉사하신 분이셨다.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LA/OC에는 대형 종교기관(교회)들이 많다. 각 교회마다 경조부란 부서가 있어 상을 당한 교우들을 돕고 장의예식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을 본다. 하지만 각 종교단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알지 못하기에 기초적인 도움만 제공하는 같다. 종교기관 혹은 상조회들이 조금 더 장례에 대한 지식을 갖추면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동포들의 마지막 예식이 아름답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사진=ftc.gov

동서장례  
화장·매장·장례보험  
(714) 951-2520  
Cypress, CA  
대표: 이효섭 FD2495



# 각종 디스크 및 협착증세 치료 최고 권위 전문의!



Dr. 윤동준

서울대학교/ UC Irvine  
LA 척추신경의대  
CA척추신경보드 전문의  
CA척추신경협회 정회원  
미주척추신경협회 정회원  
가든 그로브 개업 31년

디스크 협착증 증세로 고통 받는 분들이 수술 않고, 통증 없는 치료 후 기적 같으며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모습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목·허리 디스크 탈출증 / 좌골신경통 / 퇴행성 디스크 / 척추관협착증 / 만성요통

\* 각종보험 및 메디케어 환영 (HMO Group : SMG, CENTER 환영)

진료과목 (각종 근육, 신경장애 및 스트레스성 통증)

- 머리 두통/어지럼증/안면마비증세
- 목 목디스크 (팔과 손가락 통증 및 마비증상 동반) / 목 통증 및 뻣뻣한 증상
- 어깨 굳거나 빠근한 통증 / 어깨가 안돌아가는 증상 (Frozen Shoulder) / 오십견 / 견비통
- 등 척추측만증 (Scoliosis) 특수교정 (특히 초등학교생 때 조기 검진중요)
- 허리 허리디스크 및 협착증 (엉치, 다리, 발바닥 및 발가락 저림, 마비증상 동반) / 퇴행성 관절염 / 요통 / 산후 허리통증
- 팔 팔꿈치 통증 / Tennis Elbow / 손목 / Carpal Tunnel Syndrome / 손, 손가락 저림증 및 무감각 증상
- 다리 좌골신경통 (다리, 발바닥, 발가락 통증, 저림 및 마비증상 동반) / 무릎통증 / 발목통증 / 변증상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및  
각종 일반 사고  
후유증 전문치료



• 31년의 풍부한 임상경험  
• 흉내 낼 수 없는 풍부한 의학 지식  
• DRX 9000 (최첨단 디스크 감압치료기) 위에 3가지가 모두 함께 공존하며 운동준 원장이 직접 정성으로 치료하기에, 정확한 진단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성공률의 각종 디스크 치료의 "최고 권위 전문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윤동준 척추신경 병원 714.539.1717  
12620 Brookhurst St. #5, Garden Grove

Lampson Ave	
Brookhurst St	Euclid
Garden Grove St	
22 Fwy	